

2025학년도 산학협력단

연구·사업비 감사 지적 사례 안내

2026. 4.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1 인건비

<사례1>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시 10원 미만의 끝수를 절사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지급액에서 10원 미만의 끝수(원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하며(절사), 원단위 금액이 포함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및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사례2>

- 기관부담금(4대보험료)은 과제별 인건비 비율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나, 인건비 계상률 대비 초과 징수되어 청구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과제별 인건비 비율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함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연구수당

<사례>

- 연구수당 지급 시 연구책임자만 평가하고 참여연구원은 평가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인건비 실집행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된 연구수당이 있음

1) 처리기준

- 연구개발 기간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해야 함
 - 인건비를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단독 과제의 경우 해당없음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3 구매·계약

<사례1>

- 건당 300만원 초과하는 소모성 재료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음
- 건당 300만원이상 소모성 재료로 중앙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연구비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재료 및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중앙구매 요청을 해야 함

2) 관련규정

-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및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례2>

- 연구재료비를 해외에서 구매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인 경우 관세감면을 받아야 함
- 해외에서 물품구매 시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함

1) 처리기준

-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재료 및 소모성 물품 등을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감면을 받아야 함
-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첨부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사례3>

-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물품, 용역을 수행한 뒤 대금을 청구할 때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장이 제출하여야 할 납부(완납)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4 연구활동비

<사례1>

- 국내출장 시 지급 가능한 여비 항목은 운임, 식비, 일비로 제한되어 있으나 일부 출장 건에서 여행자보험(준비금 성격)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근무지의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항목: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2)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사례2>

- 회의비를 집행하면서 배달앱(예: 쿠팡이츠)을 통해 음식 주문을 진행하였으나,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배달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실제 회의장소 및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소명결과 연구자의 자택으로 배달하는 등 회의비(식대)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회의비 중 식비 1인당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 가액 기준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자, 회의 내용,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연구비 지원 기관의 규정에서 외부참석자의 참여를 의무화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사전 내부결재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① 회의비 지출 시 회의록 미제출,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 비용
 - ②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지 않은 회의비(「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
 - ③ 야근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출장자의 여비 식대
 - 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⑥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5] 부가세

<사례>

- 과세 과제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지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처리기준

- 원활한 연구수행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연구비 카드(법인 카드를 포함)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연구비 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과세 과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가능한 세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집행하였을 경우 부적정 집행 사항으로 간주함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6 연구비 집행시 이해관계자 수의계약

<사례>

-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공직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1) 처리기준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2) 관련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7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사례>

- 지출내용과 상이한 예산과목을 적용
- 지출결의서 작성 시 기재된 내역과 실제 지출서류 내용이 상이
- 지출서류에 필요한 증빙서류 미비 등

1) 처리기준

- 예산 집행 시, 각 예산과목의 항목에 맞게 비목을 선택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예산집행 목적 및 소요내역 내용을 검토한 후 지출금액, 상세내역을 기재해야 함
- 지출결의서 제출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1] 출장여비 중 운임(항공료 제외) 및 숙박비 개인카드 사용 가능

- 적용일자: 2026. 2. 10.부터~
- 관련 규정
 -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 주요 개정 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집행 시 출장여비 중 운임(항공료 제외) 및 숙박비의 개인카드 사용을 허용함

변경 전	변경 후
직접비-연구활동비 <신 설>	직접비-연구활동비 출장비 중 운임(항공료 제외) 및 숙박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실무상 비효율적(매입 취소 시 추가 수수료 발생 등)인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세 과제에서 개인카드로 집행한 숙박비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집행하여야 한다.

2]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변경

- 적용일자: 2026. 2. 10.부터~
- 관련 규정
 -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 주요 개정 내용
 -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별표 1]」 외부 전문가 기술활용비 지급기준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직접비-연구활동비 2. 계상·집행 기준-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연구활동비 2. 계상·집행 기준-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0,000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0,000원	1시간당 상한액	400,000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0,000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0,000원 ※ 1시간 상한액+ 1시간 상한 액의 50%	제한 없음	사례금 총액 한도	600,000원 ※ 1시간 상한액+ 1시간 상 한액의 50%	제한 없음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이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직급이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 시간당 100만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함		

③ 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환율)

- 환산 시점: 국외출장은 신청(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시환율 적용)할 때 기준으로 한다.
- 현지통화 환산실비 상한액: '영 별표4'에 따라 미국 달러화(USD)로 책정된 국외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환산 시점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의 통화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청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 매도율/현금으로 구입할 때)을 기준으로 함.
-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 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결제할 때에는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고, 정산시에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나)-(4), Ⅱ-5-다-3)-가)-(1)-(가)

※ 출처: 공무원여비 100문100답(인사혁신처) 2022.11.

④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신설 및 비과세 적용방법 안내

- 적용일자: 2026. 1. 1.부터~
- 관련 규정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 주요 개정 내용
 - 「국립한밭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32호 서식]」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신설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Status)

소득자 정보(Beneficiary)

성명(Full Name)	
주민(외국인)등록번호 or 여권번호 (Resident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주소(Address)	
생년월일(Date of Birth)	

비거주자 판정(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Status)

구분(criteria)	예 (Yes)	아니오 (No)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Do you have your permanent home in Korea?)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for 183 days or more?)		
3.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Have you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183 days within the last two years?)		
4.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ccupation which would require you to reside in Korea for 183 days or more?)		
5.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family (spouse, children, etc)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6.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7.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Are you a public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Are you an employee who has been dispatched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n overseas branch, office, or local subsidiary of a domestic corporation?)		

위 항목 모두에 "NO"로 체크한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니 아래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f all of the above items are checked 'NO', you will be classified as a non-resident.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submit the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together.)

비거주자 (Non-Resident)	거주지국(Country of Residence):	
	<input type="checkbox"/> 과세	<input type="checkbox"/> passport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 <input type="checkbox"/> Certificate of Residence

위의 사항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I acknowledge that I will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s or consequences arising from false statements.)

20 . . .

Signature _____

※ 필요 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 「소득세법」 제156조의2 개정에 따라 해당시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법적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작동 <삭제>

5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임차료, 숙기료, 통역료또는회의비등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필요한회의·세미나개최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p>*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광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p>

○ 사용기준

-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40%를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